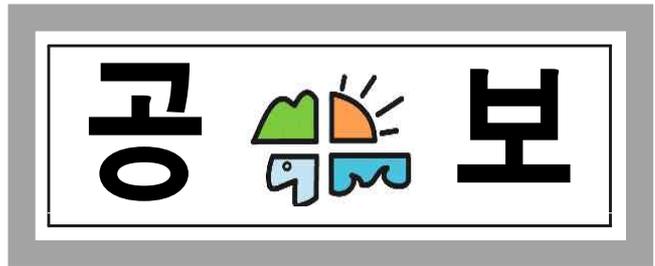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70호 2014년 6월 27일(금)

훈 령

- 속초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..... 2

고 시

-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..... 4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속초시장

(직인)

2014. 6. 27.

속초시 훈령 제663호

속초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정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 속초시장의 자문을 위해 정책보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시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속초시장(이하“시장”이하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
2.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·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 등의 시정참여의 촉진과 의견 수렴
3.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정책보좌관은 시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제5조(여비 등) 정책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자료제출 및 협조요구)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엄수의 의무) 정책보좌관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가진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온천공보호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온천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 노학동 3-27번지의 1필지(3-19번지)에 대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6. 27.

속 초 시 장

1. 명 칭 : 속초 알프스온천공보호구역
2. 위 치 : 속초시 노학동 3-27번지의 1필지(3-19번지)
3. 면 적 : 5,950m²
4.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 : 게재생략
5. 해제사유 :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며,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.
6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관광과(☎ 033-639-2362)에서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열람합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